

제 3 장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자 및 대상)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2조 (이용절차)

수급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요양원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택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입소함과 동시에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등급판정신청 절차

1. 신청(공단 각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 방문조사(공단직원이 방문)
3. 이용자 병원 내원후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6. 서비스이용 원하는 요양원에 신청

※ 수급자 이용절차

1. 서비스이용 상담 (전화 & 방문)
2.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3. 접수 및 이용 계획서 작성
4. 요양원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제3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인근지역 아파트 게시판 홍보

3. 기존 계약자 지인 소개

- 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 ① 요양원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시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된다.
-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통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본 요양원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요양원주체, 입소이용자,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수가표는 30일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	2,527,200	2,344,500	2,214,000		

(장기요양수가표 2.3:1)

시설 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 : 84,240	1일 : 78,150	1일 : 73,800
		20% : 505,440	20% : 468,900	20% : 442,800
		12% : 303,270	12% : 228,340	12% : 256,680
		8% : 202,180	8% : 187,560	8% : 177,120
	식재료비	식대	간식	합계
		10.500	1.000	11.500
		30일기준 : 345,000 원		

제5조 (급여비용 청구)

-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의)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와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수급자가 요양원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는 24시간 입소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 제공서비스

① 시설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지자극활동등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목욕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목욕공간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배드목욕 욕실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②목욕은 주1회 월 4회 이용이 가능하다

제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